

회의 절차 규칙: 규정심의회

규정심의회 운영위원회는 2010 규정심의회에 회의 절차 규칙을 다음과 같이 추천한다.

목차

- 제1항 — 정의
- 제2항 — 심의회 의원
- 제3항 — 의사 일정
- 제4항 — 의원에 의한 동의
- 제5항 — 본안동의
- 제6항 — 의사진행 동의
- 제7항 — 동의 제기
- 제8항 — 동의 개정
- 제9항 — 본안동의에 대한 결정
- 제10항 — 토의
- 제11항 — 투표
- 제12항 — 재결(裁決)에 대한 이의 제기
- 제13항 — 의사 진행 문제
- 제14항 — 휴회
- 제15항 — 입법안 철회
- 제16항 — 심의회의 입법안 제안
- 제17항 — 자료의 배포
- 제18항 — 의사 일정의 개정
- 제19항 — 규칙의 개정
- 제20항 — 규정되지 않은 절차 문제

제 1항 — 정의. 다음의 단어와 문구들은 이들이 사용된 본문에서 분명하게 달리 사용된 것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장. 심의회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임원으로 심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을 가리킨다. 의장은 규정심의회 의사진행을 감독하며, 회원들의 의사진행 동의를 포함한 의사진행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정관 문서. RI 세칙 제1조에 명기된 3가지 문서로 RI 정관, RI 세칙, 그리고 표준 로타리 정관을 말한다.

하자있는. 다음과 같은 입법안을 말한다:

- i. 2 개 이상의 모순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 ii. 정관의 모든 관련 부분을 개정하지 않는 경우,
- iii. 입법안 채택이 관리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 iv. 결의안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가) RI 정관 문서의 조문이나 정신에 저촉되는 조치를 요구하거나, 그러한 의견을 표명한 경우, 혹은 (나) 이사회나 사무총장 재량에 속한 관리상의 조치를 요청한 경우,

- v. RI 세칙 또는 RI 정관에 저촉되는 방법으로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 또는 RI 정관에 저촉되는 방법으로 RI 세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 vi. 시행 또는 집행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제정안. RI 세칙 제7.010.항에 따라 정관 문서를 개정하기 위한 심의회 결정.

입법안. 심의회가 정식으로 채택한 제정안 및 결의안.

다수결 투표. 동의에 대한 승인에 요구되는 투표 수는 단순 과반수이거나 3분의 2 이상이다. 요구되는 다수결의 적합성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1) 단순 과반수는 출석 투표한 의원들의 투표수 중에서 제안에 반대한 표보다 최소한 1표 이상 더 많은 찬성표를 요구한다.
- 2)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은 출석 투표한 의원들의 투표수 중에서 제안에 반대한 표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더 많은 찬성표를 요구한다.

출석 투표 의원. 제안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하는 의원 수. 결석하거나 기권한 투표 의원들은 출석 투표 의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동의(動議). 심의회가 조치를 취하도록 의원이 제안하는 행위. 본안동의(本案動議)와 의사진행 동의, 2가지가 있다.

의사일정. 제정안 및 결의안 심의 순서, 그리고/또는 심의회에서 심의될 사항에 관해 발언할 수 있는 시간 제한 등에 대해 출석 투표 의원의 단순 과반수로 채택된 의사 일정. 특별 의사일정은 규정심의회 운영위원회가 확인하여 추천한 특정 입법안들에 대한 심의 순서로서 일정 및 시간, 그리고 입법안에 대한 발언자의 발언 시간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안자. RI 세칙 제7.020. 및 7.030.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심의회 심의를 위해 1개 또는 그 이상의 입법안을 제출한 클럽이나 기타 승인된 당사자.

정족수. RI 세칙 제8.110.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안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출석 투표 의원 수.

결의안. RI 세칙 제7.010.항에 의거하여 정관 문서를 개정하지 않는 심의회 결의.

기술적인 입법안. 정관 문서의 실질적인 내용을 개정하려는 입법안이 아닌 단지 어순이나 단어를 교체하여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려는 입법안.

제 2항 — 심의회 의원. 투표권이 있는 의원과 없는 의원 모두를 포함한 심의회 의원을 말하며, 이들은 심의회 기간 동안 동일한 특전과 책임이 있다. 단, 투표권이 없는 의원은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의원들은 전체 심의회 기간 동안 교체 또는 대체 의원으로 대체 또는 대표될 수 없다. RI 세칙 제8.110.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투표 의원은 회부된 각 안건에 대해 1표씩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심의회에서 대리 투표는 없다.

제 3항 — 의사 일정. 심의회 의사 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 1) 정족수 출석을 확인하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사전 보고.
- 2) RI 세칙 제8.120.1.항에 따른 절차 규정의 수정안에 대한 채택 및 심의.

- 3) RI 세칙 제7.050.4.항의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제안된 모든 입법안을 심의회에 회부.
- 4) RI 세칙 7.050.2. 및 7.050.3.항의 규정에 의거, 규정심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입법안을 RI 이사회가 추가 제기시키기 위한 동의들에 대한 결정. 심의 안건 추가 동의는 토의 또는 개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정관 및 세칙 위원회 위원이 그 안이 심의회에 회부되지 않은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동의 제안자는 그러한 이유에 대한 반대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한 동의는 RI 세칙 제7.050.2. 및 7.050.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심의회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5) 심의 순서와 그날의 기타 필요한 의사 일정 채택.
- 6) RI 세칙 제7.050.6.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식으로 제안된 모든 입법안에 대한 심의 및 결정.
- 7) 자격심사 위원회의 최종 보고.
- 8) 심의회 폐회.

제 4항 — 의원에 의한 동의. 투표권 여부에 관계없이 심의회 각 의원은 심의회가 결정할 사항에 관하여 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동의에는 다음 두 항에 설명된 대로 본안동의와 의사진행 동의, 2가지가 있다.

- A. **우선권.** 본안동의를 토의하는 중에, 그 본안동의와 관련된 의사진행 동의가 심의회 심의를 위해 제안될 수 있다. 의장이 의사진행 동의를 접수하면 의사진행 동의가 당시 심의 중이던 어떤 본안동의 보다도 우선하며, 본안동의를 계속 심의하기 전에 이를 우선적으로 먼저 처리하여야 한다.
- B. **의결 투표수.** 동의 채택에는 정관 문서나 본 규칙이 3분의 2 이상이나 기타 다수결을 요구하지 않는 한, 출석 투표 의원의 단순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제 5항 — 본안동의. 본안동의를 정식으로 제안된 제정안이나 결의안 채택을 위해 심의회 의원이 제안하는 과정이다. 모든 제안된 제정안과 결의안은 심의회에서 심의되기 전에 본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입법안 승인을 위한 본안동의를 본 규칙의 제9항에 수록된 바와 같이 원안 또는 개정안 형식으로 제안될 수 있다. 한 의원이 본안동의를 제안하고, 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심의회는 그 본안동의를 처리할 때까지는 다른 본안동의를 심의할 수 없다. 2개 이상의 기술적인 입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안동의를 제외하고는 모든 입법안은 별도의 본안동의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

제 6항 — 의사진행 동의. 다양한 목적을 가진 여러 종류의 의사 진행 동의가 있으며, 그 우선권은 의장이 결정한다. 의사진행 동의에 대한 도표를 참조할 것(부록 A). 가장 일반적인 의사 진행 동의는 다음과 같다:

- A. **개정.** 이는 심의회에서 심의 중인 안건을 수정하기 위한 동의이다. 이러한 동의는 토의할 수 있으며, 본 규칙의 제8항에 해당되는 경우, 동의 제안자만이 개정할 수 있다.
- B. **토의 종결.** 이는 심의 중인 안건을 결론 짓기 위한 동의이다. 이러한 동의는 토의 또는 개정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심의중인 안건에 대한 토의에서 이미 발언한 의원은 이 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의장은 그러한 제안에 관한 적절한 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토의 종결 동의를 받아들여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동의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제안에 관한 토의는 종결되고, 의장은 심의 중인 제안에 대한 표결을 요구한다. 그러나 심의 중인 제안이 본안동의인 경우, 동의 제안자에게는 최종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시간이 주어진다. 토의 종결 동의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심의 중인 제안에 관한 토의는 계속된다.

- C. **심의 연기.** 이는 심의 중인 안건을 지정한 시간까지 연기하려는 동의이다. 이러한 동의는 토의 및 개정이 가능하다. 연기하려는 동의가 채택되면, 해당 제안에 대한 심의는 지정된 시간 또는 그러한 시간이 임박했을 때 다시 재개된다.
- D. **재심의.** 이는 심의회가 내린 종전의 결정을 재심의 하자는 동의로서 본안동의에 대한 조치나 이사회에 회부한 동의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동의는 규정한 바와 같이, 토의는 할 수 있으나 개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동의는 재심의 당일 또는 바로 그 다음 날에 제안되어야 한다. 본안동의 제안자에게 재심의에 대한 적절한 통보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재심의 동의는 다수 측에 찬성한 의원에 의해 제기되어야 한다. 동의는 다음의 형식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의장, 저는 다수 측에 투표한 의원으로 제정안(혹은 결의안)00번에 관한 심의회의 결정이 재심의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러한 동의에 대한 발언권은 재심의 찬성자 2명과 반대자 2명에 한해 주어지며, 이것이 끝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 각 발언자에게는 1분 30초간의 발언이 허용되며, 단순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동의는 승인된다. 재심의 동의가 승인되면, 재심의 될 본안동의는, 의장이 특별히 일정을 정하지 않는 한, 심의 순서의 맨 마지막에 처리되며, 일반적인 토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 본래 본안동의를 제안한 의원에게 다시 토의 개시를 위한 발언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 E. **이사회 회부.** 이는 입법안을 RI 이사회에 회부함으로써 심의회 심의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이 동의는 토의할 수 있으나 개정할 수는 없다. 입법안을 RI 이사회에 회부하는 것은 심의회가 해당 입법안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해당 입법안은 이사회에 대한 청원서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 F. **규칙 적용의 정지.** 이는 특별한 경우나 심의회 기간 중 본 규칙의 1가지 또는 그 이상의 특정 규칙의 적용을 정지시키자는 동의로, 토의나 개정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동의는 현안의 제문제가 없을 때에 한하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승인된다.
- G. **심의 보류.** 이는 심의회에서 심의 중인 제안을 무기한 연기하기 위한 동의이다. 그러나 특정 시각이 주어지면 심의 보류 동의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이러한 동의는 토의할 수 있지만 개정할 수는 없다. 동의가 채택되면, 보류된 사안은, "심의 재개" 동의가 제출되어 가결되지 않는 한, 심의회에서 재심의 될 수 없다. 만약 의사진행 동의가 보류되는 경우에는, 의장이 예외로 결정하지 않는 한, 의사진행 동의의 대상인 본안동의 또한 보류된다. 이러한 동의는 입법안 2개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 H. **심의 재개.** 이는 심의회에 의해 심의 보류된 종전의 사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기 위한 동의이다. 이러한 동의는 토의할 수 있지만 개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동의는 입법안 2개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제 7항 — 동의 제기. 심의회에서 어떤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원은 "동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동의는 심의회가 정관 규정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동의는 의원이 먼저 좌석에서 일어나 의장으로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뒤, 본인의 성명을 말하고, 투표 의원인 경우에는 소속 지구도 밝혀야 한다. 그런 후, "의장,

저는

동의합니다."라고 말한다. 본안동의를 제외한 모든 동의에는 다른 의원의 재청이 있어야 한다. 재청은 회원이 일어서서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뒤 본인의 성명과 투표 의원인 경우에는 소속 지구를 밝히고, "의장, 재청합니다."라고 말한다. 의장은 의석에서 즉시 재청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재청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재청이 없으면, 본안동의가 아닌 한, 그러한 동의는 심의회에서 심의되지 않는다.

제 8항 — 동의 개정. 다른 동의를 개정하고자 하는 동의로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

A. 서면 개정 및 통지. 본안동의를 개정하기 위한 모든 동의는 서면으로, 본안동의가 있기 최소한 하루 전에 의장 앞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안동의에 대한 개정안이 심의회 석상에서 구두로도 명확히 이해될 수 있거나 또는 심의회 의원들에게 개정안 본문을 배포할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경우, 의장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본안동의 개정 서면 동의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제출된 이러한 동의를 접수하기 전에, 심의회 운영위원회의 확인 또는 심의회에 배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의장은 본안동의의 심의를 연기할 수 있으며, 또 관련 의사진행 동의를 특정 시간까지 연기할 수 있다.

B. 기타 제한. 다른 동의를 개정하기 위한 동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의장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1) 심의 중인 동의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경우. 만약 의사진행 동의인 경우, 개정은 본안동의의 목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동의 개정의 제안을 통해 새로운 독립된 사안을 제기할 수 없다.
- 2) 심의 중인 동의의 목적을 정반대로 선화하는 경우. 지지의 입장에서 반대의 입장으로, 혹은 반대의 입장을 지지의 입장으로 바꾸는 동의 개정은 허락되지 않는다.
- 3) 심의회에서 이미 결정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 4)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형식만 다르게 개정하는 경우.
- 5) 제정안에서 "제정"이라는 말을 삭제하거나, 결의안에서 "결의"란 말을 삭제하는 경우
- 6) 심의회에서 심의 중인 동의에 합리적인 명분을 없애도록 말을 삭제하거나 삽입하는 경우.
- 7) 불성실하거나 변덕스러운 내용인 경우.
- 8) 결의안의 서두 문구를 개정하는 경우.

C. 개정안 재개정. 개정안에 대한 개정은, 의장 수락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 경우라면, 심의회 표결없이 최종 개정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 9항 — 본안동의에 대한 결정. 본안동의에 대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A. 원안 또는 개정안. 사무총장에 의해 심의회에 정식 제출된 입법안의 승인을 위한 본안동의를 다음 중 한 가지 형식을 취해야 한다:

- 1) 심의회에 상정된 원안대로의 입법안 채택을 위한 것; 또는
- 2) 제안자에 의해 제출된 개정안 채택을 위한 것. RI 세칙 제7.050.4.항에 따라 개정에 대한 서면 통보가 있어야 한다.

심의를 위해 제출된 입법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자의 대표는, RI 세칙 제7.050.4.항에 의거하여 개정안에 대한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심의회에서 채택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개정 동의를 제기함으로써 개정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개정 동의를 제출함에 있어 개정 제안자의 대표가 사용한 시간은 본안동의의 발표를 위해 배당된 시간의 일부로 간주된다.

- B. 제안자 대표. 입법안을 제안한 클럽 및 지구가 심의회 의장에게 심의회 다른 의원이 그러한 제안을 대표할 것이라고 통보하고 지명된 의원이 그러한 대표 역할을 하기로 수락하지 않은 한, 각 지구의 투표 의원이 소속 클럽 및 지구의 입법안 제안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입법안이 심의 일정에 의해 심의될 때, 제안자 대표는 해당 입법안의 동의에 우선권을 갖는다. 제안자 대표가 입법안에 대한 동의를 하지 못했으면, 다른 어떤 의원이라도 그 입법안에 대한 동의를 내놓을 수 있다.
- C. 동의의 결여. 입법안이 예정대로 상정되었을 때, 그리고 그러한 안건의 채택을 위해 어떤 의원도 본안동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안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라도 본안동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제안자 대표가 정당한 이유로 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은 나중에 그 안에 대한 본안동의 제안을 허락할 수 있다.
- D. 채택 또는 부결. 입법안을 채택하기 위한 동의를 표결을 위해 제안되어 필요한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으면, 그 안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경우, 채택 동의를 필요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0항 — 토의. 모든 심의회 의원들은 모든 안건에 대한 토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심의회 의원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러한 토의에 참여할 수 없다.

- A. 발언 허락. 동의에 대한 토의는 동의가 정식으로 제안되었다고 의장이 선포하고 난 후에야 시작된다. 의원들은 지명을 받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의장이 발언을 허락할 때 발언할 수 있다.
- B. 토의의 개시 및 종결. 본안동의 제안자는 동의안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거나 종결할 특전을 부여받았으며, 그 날의 의사 일정에 특별히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2분 30초간 제안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중요한 의견, 또는 반대 의견이 다른 의원에 의해 제기되면, 본안동의에 관한 토의 마지막에 1분 30초간 반대 의견에 대한 반론을 펼 수 있다. 동의 제안자는 본인이 특별 허락을 요청하고, 의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본안동의에 관한 토의에서 발언할 수 없다.
- C. 토의 제한. 본안동의 제안자가 아닌 다른 의원들은 특별 허락을 요청하고, 의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토의에서 오직 1회에 한해 발언할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아직 한 번도 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이 발언 요청을 해 놓고 대기하고 있는 한, 두 번째 발언을 위한 특별 요청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 날의 의사 일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어떠한 의원도 심의 중인 제안에 관해 1분 30초 이상 발언할 수 없다. 단, 본안동의 제안자를 위해 별도로 규정하였거나, 출석 투표 의원 단순 과반수에 의한 찬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D. 토의의 균형. 의장은 제안자와 반대자에게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1항 — 투표. 일반적인 투표 방법은 정당한 사유로 의장이 결정하지 않는 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하며, 전자투표 방식이 심의회에서 사용되지 못할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투표는 구두 혹은 거수로 이루어지며, 의장은 각 투표 결과를 즉시 발표한다. 만약 의장에 의해 발표된 결과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원이 제기할 경우, 그 의원은 다른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찬반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표결이 요구되거나 의장이 표결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장이 우선 찬성자들에게 잠시 기립했다가 착석 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후, 반대자의 기립, 착석을 요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확실히 판단할 수 없거나, 제2차 표결을 요구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의장이 집계 임원을 지명하여 다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 때에는 찬성자들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헤아린 후 착석하게 하고, 그것이 끝나면 반대자들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헤아린다. 의장은 집계 임원의 보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 12항 — 재결(裁決)에 대한 이의 제기. 의원은 RI 세칙 제8.120.2.항의 규정과 같이, 의장이 재결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의 제기는 재청이 필요 없으나, 사안이 재결된 직후에 제기되어야 한다. 만약 토의가 진행 중이거나 다른 사안이 심의 중이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이의 제기는 토의될 수 있으나 개정될 수는 없다. 의장은 이의 제기 신청을 받으면 의장석을 떠나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재결 이유를 2분 30초간의 주어진 시간 동안 설명할 수 있다. 의장이 재결에 대한 반대 의견에 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다. 의원들은 이의 제기에 대해 1분 30초 동안 발언할 수 있으며, 의장은 재결에 대한 반론에 2분간 답변할 수 있다. 그 다음, "의장이 재결한 것에 대하여 지지합니까?"라는 질문이 심의회에 제기된다. 의장 재결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출석 투표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투표 결과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의 재결은 유지된다.

제 13항 — 의사 진행 문제. 의원들은 의사 진행 문제를 제안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는 동의가 아니며, 재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토의되거나 개정될 수 없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의장의 재결이 요구된다.

A. 특전 문제. 이는 심의회 및 의원들에 대한 권리 및 특전과 관련하여 의원들이 제기하는 것이다. 특전 문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심의회 조직;
- 2) 회의장 난방, 조명, 그리고 환기 장치와 같은 의원들을 위한 편의;
- 3) 소음 및 기타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요소 제거;
- 4) 심의회 의 제안자 또는 기타 의원들의 언행;
- 5) 비행 및 기타 규칙 위반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
- 6) 방청객 및 방문자들의 언행;
- 7) 발행된 보고서 및 의사록의 정확성에 관한 문제.

심의회 특전 의제는 심의회에 참석한 각 의원들을 위한 개인적인 특전 의제보다 우선한다.

- B. 명령 문제. 이는 의원이 정관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의장은 의사 진행 절차상의 문제가 합당한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C. 정보 문제. 이는 의원이 심의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의장에게 사실 또는 진행 절차상의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다. 의장은 그러한 요청이 합당한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의장이 요청을 합당하다고 판정하면, 의장은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다른 심의회 의원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사무총장이 그러한 요청에 답변하도록 요청을 받을 경우, 그는 요청된 정보를 제공할 담당 직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 14항 — 휴회. 심의회 회의는 의장 또는 의원에 의한 휴회 동의로 휴회, 재소집 될 수 있고 또 폐회될 수 있다. 그러한 동의는 토의되거나 개정될 수 없다.

제 15항 — 입법안 철회. 만약 입법안이 본안동의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입법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안자 대표 또는 입법안 제안자가 입법안을 철회한다고 심의회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안자가 한 지구가 아닌 여러 지구일 경우, 해당 대표자들은 입법안을 철회한다는 사무총장 앞으로의 서면 통보에 반드시 합류해야 한다. 입법안을 제안한 지구 대표들은 심의회 석상에서 의장의 허락을 받아 제안된 입법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할 수 있다. 입법안이 본안동의인 경우에는 규정심의회 허락을 받아 본안동의 제출자만이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제 16항 — 심의회의 입법안 제안. 규정심의회는 RI 세칙 제7.020.항의 규정에 따라, 차기 심의회에서 다룰 제정안의 제안을 포함하는 결의안을 자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심의회를 대신하여 결의안을 제안하려는 의원은 규정심의회 개최 마지막 전날 12:00시까지 해당 결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결의안은 회기 동안 심의회가 결의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최소한 심의회 투표 의원 25명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감사, 지원, 공감 또는 위로를 표명하기 위한 결의안인 경우에는 상기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심의회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의장은 심의회의 심의 시기를 정하거나 혹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적 이유를 발표해야 한다. 입법안이 심의회에서 다루어지도록 승인되면, 검토를 위해, 결의안을 제출한 의원은 의장에게 그 안의 채택을 동의할 수 있다. 그러한 동의는 다른 본안동의와 같이 토의 및 개정이 가능하다.

제 17항 — 자료의 배포. 입법안의 찬반에 영향을 미칠 입법안에 관한 자료는, 의원이 그러한 자료 배포 승인을 요청하고, 출석 투표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없는 한, 심의회 회의 개최 도시에 도착한 후에 투표 의원들에게 배포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배포 금지 규정은 사전에 전체 심의회 의원들에게 제공된 찬반 설명에 관한 자료나 RI 이사회에 의해 제공된 정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심의회 의원들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배포된 모든 자료들을 무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장에 의해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제 18항 — 의사 일정의 개정. 의사 일정은 정식으로 제안된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동의는 토의 및 개정이 가능하며, 동의를 승인되기 위해서는 출석 투표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일 심의회 운영에 영향을 주는 개정일 경우, 의장은 이에 대한 본인의 찬반 여부 의사를 발표할 수 있다.

제 19항 — 규칙의 개정. 이러한 규칙은 출석 투표 의원의 단순 과반수의 승인에 따라 정식으로 제의된 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동의는 토의될 수 있지만 제8.C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될 수 없다. 동의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출석 투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20항 — 규정되지 않은 절차 문제. 이 규칙에서 일관성이 없고, 애매모호하거나 불확실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RI 정관 및 세칙에 따라 해결한다. 이러한 규칙에서 논의되지 않은 회의 규칙 사항은 의장이 기본적인 공정성에 합치되게 결정하고 그러한 의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의원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부록 A:

의사 진행 동의도표

동의 종류	토의 가능 여부	개정 가능 여부	필요한 과반수
가. 재정	예	아니오	단순 과반수
나. 토의 종결	아니오	아니오	3분의 2 이상
다. 심의 연기	예	예	단순 과반수
라. 재심의	예 (한정)	아니오	단순 과반수
마. 이사회에 회부	예	아니오	단순 과반수
바. 규칙 적용의 중지	아니오	아니오	3분의 2 이상
사. 심의 보류	예	아니오	단순 과반수
아. 심의 재개	예	아니오	단순 과반수